

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복지건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12일, 권광택 의원 외 20명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1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,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(2022년 8월 25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축조심사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권광택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,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.

- 따라서, 돌봄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승언)

가. 제안이유

-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외로움 종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‘장기요양기관’과 ‘장기요양요원’에 관하여 정의함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·권익증진·지위향상에 대한 노력을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
 -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·권익증진·지위향상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·지위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·시행 하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경상북도에 적합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정책의 발굴·개발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
 - 이는 장기요양요원을 폭언·폭행·성의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장기요양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
-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총괄할 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절반이상이 매년 폭언·폭행을 당함
- 그러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·권익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함
-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짐으로 처우개선이 시급함
-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